##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80

발의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 박성준 • 박홍근 • 박홍배

조계원 • 노종면 • 허종식

정성호 • 김성회 • 강유정

문진석 • 윤종군 • 민병덕

박희승 · 염태영 의원

(14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초기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여성근로자들이 적정한 기간의 휴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에 유산·사 산을 재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유산·사산 휴가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여성근로자

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
-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
-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
-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②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3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u>대통령령으</u>	<u>다음 각</u>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	호의 기준에 따른 유산・사산		
<u>산 휴가를</u> 주어야 한다. 다만,	<u>휴가를</u>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			
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			
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lt;신 설&gt;</u>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		
	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		
	<u>터 10일</u>		
<u>&lt;신 설&gt;</u>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		
	<u>산한 날부터 30일</u>		
<u>&lt;신 설&gt;</u>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		
	산한 날부터 60일		
<u>&lt;신 설&gt;</u>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		
	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		
	터 90일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